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1월 7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1조제3항 후단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현재 현행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증서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급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활용하는 등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선박안전관리증서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인정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는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예외로 두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선박안전관리증서등의 원본 또는 사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전자문서로의 갈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애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현장에서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